채굴산업 투명성 이니셔티브(EITI)와 관련 해외입법 연구

Extractive Industries Transparency Initiative (EITI) and Implementing Legislation

최 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 EITI의 성립연혁과 기본구조

1. EITI성립 배경

석유, 가스 및 광물자원 등 부존자원이 풍부한 개발도상국가들이 자원부족국에 비하여 저조한 경제성장을 보이거나 부패와 빈곤의 심화를 보이는 사례가 있는데, 1990년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자원의 저주(Resource Curse)라고 불리는 이러한 현상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제프리 삭스(Jeffrey Sachs), 조셉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 테리 린 칼(Terry Lynn Karl), 폴 콜리어(Paul Collier)와 같은 학자들은 자원이 풍부한 국가들이 석유, 가스, 광물로부터 막대한 잠재적 이익을 취하지 못하고 오히려 빈곤, 갈등, 부패가 만연해지는 구조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자원의 저주에 걸린 국가의 경우 풍부한 천연자원에 기반한 국부가 오히려 다른 수출분야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거나 채굴산업 이외의 산업부문 성장을 저해하고, 현지국 권력자들이 재정수입을 횡령하거나 지역 사회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구조가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굴산업 투명성 이니셔티브(Extractive Industries Transparency Initiative: EITI)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여 석유, 가스 등 에너지 자원과 광물 자원이 풍부한 국가들의 정부가 채굴산업 관련하여 받은 수입(revenue)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고 관련 자원개발기업들도 지출(payment) 내역을 공개하게 함으로써 채굴산업의 투명성(transparency)과 책임성(accountability)을 제고하기 위한 국제적 이니셔티브로 성립되었다.

EITI는 한 국가의 천연자원에 대한 권리와 혜택은 궁극적으로 자원보유국 국민들에게 귀속되어야 하며, 국민들은 그들의 정부가 채굴산업에서 얻는 수익과 혜택에 대하여 확인할 권리가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1] 천연자원이 풍부한 나라에서 정부세입은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의 자원개발회사(extractive companies)의 막대한 지불금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수입금과 회사의 지출금에 대한 대부분의 정보는 공개되고 않고 있었다.[2] EITI는 정부, 자원개발회사, 시민사회(civil society)와 같은 이해관계자(stakeholder)들이 함께 협력하여 채굴산업과 관련된 현지국 정부의 수입금과 자원개발기업의 지출금에 대한 정보를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불투명한 자금의 흐름과 부패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를 개선하고 불신을 해소하려는 관점에서 주창되었다.[3] 채굴산업에 있어서 이러한 구조적 개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지국 정부의 수입금이나 회사의 지출금을 보고하는 데 기준이 되는 지침의 필요하며, 이러한 제도적 접근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한 국가 또는 특정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달성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적용가능한 기준을 세우는 역할을 하는 체제가 필요하다는 배경하에서 EITI가 성립되었다.[4]

2. EITI의 성립 과정

(1) EITI 연혁

2002년 9월,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에서 토니 블레어(Tony Blair) 영국 총리가 EITI에 대한 개념을 처음 언급하였다. 이후 영국 국제개발부(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DFID)는 정부, 기업, 시민사회의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소집하였으며, 이 회의에서 각국 정부와 이해관계자 간의 상호이해와 공동협력에 기반한 채굴산업 관련 현지국 정부의 수입과 관련한 보고기준(reporting standard)을 제정해야 한다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2003년 6월 런던에서 열린 제1차 EITI 회의에서 채굴산업에서 현지국 정부의 수입금과 자원개발기업의 대정부 지출금 관련 투명성 제고를 위한 원칙(EITI Principle)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1] 12개의 EITI Principle은 천연자원개발 관련한 현지국 정부의 투명한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채굴산업과 관련된 수입금과 지출금의 공개 및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접근방법에 대한 원칙을 담고 있었다. 40여개의 기관투자자(institutional investor)들도 EITI

1) 채굴산업 투명성 강화가 채굴산업 지배구조를 향상시키고 투자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관점에서 EITI를 지지하는 40개 이상의 기관투자자들이 성명서에 서명.

가 채굴산업 관련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리스크를 줄일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하에 EITI 지지 성명서에 동참하였다. 이후 열린G8 정상회담(Summits)에서 참가국들은EITI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천명하였다. G8국가들은 국제통화기금(IMF)와 세계은행(World Bank)에 투명성 제고을 위한 정책 도입을 원하는 개도국 정부에게 기술적지원(technical support) 을 제공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세계은행은 개도국에 대한 기술적 지원 제공을 위해 2004년에 World Bank가 주관하는Multi-Donor Trust Fund (MDTF) 를 설립하였다.[2)]

2002년 부터 2006년까지의 기간동안에는 EITI는 영국 정부의 DFID 내의 부서에 의해 소규모로 운영되었으나, EITI의 효과적 시행을 위해 확장된 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2005년 3 월 런던에서 개최된 제2차 회의에서 EITI 이해관계자와 참여국들은 정부, 기업, 시민사회로 구성된 International Advisory Group(IAG)의 설립과 6개의 EITI Criteria에 대해 합의하였다. 2006년 EITI 인증[3)]가이드(Validation Guide)가 합의 되었는데. [5)] EITI Validation Guide는 EITI 후보국가(Candidate country) 가 되기 위한 가입(Sign-up) 요건과 후보국가가 EITI 준수국가(Compliant country)로 승격되기 위해 충족시켜야 하는 지표(indicator)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또한 EITI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하여 이사회(Board), 사무국(Secretariat), 총회(member’ s conference)와 같은 운영구조(governance structure)를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2006년 10월 노르웨이 오슬로(Oslo)에서 열린 제3차 EITI Global Conference 에서 이사회 설립과 운영구조에 대한 합의가 이루지고 2007년9월 EITI 국제 사무국(International Secretariat)이 오슬로에 설립되었다. 2011년 3월 파리에서 열린 제5차 EITI Global Conference에서 EITI 이사회는 23개의 개정된 EITI 규칙(Rules)을 채택하였다. EITI Rules은 보다 구체화된 설명과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6개의 Policy Notes를 담고 있었다.

2011년 파리 회의 이후 EITI 평가팀(Scanteam)이 그동안 EITI 이행국(implementing country)에서의 사례를 분석하여 평가내용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평가결과에 의하면 EITI이행국들이 채굴산업 수입, 지출금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많은 진전을 보였으나 이러한 공개가 현지국 사회에 미친 실질적 파급효과가 제한적이었음을 지적하였으며, 기존의 체제가

2) MDTF는 37개국에서 EITI 프로그램에 대한 기술, 재정지원를 위해 약 6000만 달러를 지출하였음

3) Validation과 관련하여 확인, 실증 등으로 번역되는 경우가 있고 일부 영역에서는 verification과 구분하기도 하나, 여기서는 EITI Requirement와 관련하여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여부를 확인한다는 의미에서 인증으로 번역하였음. EITI 체제와 관련하여 Standard, Requirement, Validation등 다양한 영문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들 용어에 대해 번역된 우리말 용어가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번역용어사용으로 인한 내용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번역용어를 쓰기 보다는 원문대로 표기하고, 해당 용어가 본고에서 처음 제시되는 곳에서 우리말 번역용어를 표시하였음.

EITI의 정책적 목표를 효과적으로 구현하는데 한계가 있음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평가의견에 따라 2013년 5월 시드니에서 열린 EITI Global Conference에서 기존의 EITI Rules을 대체하는 EITI 표준(Standard)이 채택되었다.

(2) EITI Standard의 제정

2003년 EITI 체제가 출범한 이래로 그동안 축적된 EITI실시 경험과 평가를 바탕으로 기존의 EITI Rule을 대체하는 EITI Standard가 발표되었는데, 새로운 EITI Standard는 기존의 EITI Rule을 기본 골자로 하였으나 EITI체제의 실행이 현지국 국민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좀 더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보고서(EITI report)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또한 각국의 구체적 상황에 맞는 EITI의 시행과 보고체계를 갖출 수 있는 구조와 절차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EITI Standard가 지향하는 목표는 다음과 같다.

가. EITI Report 의 이해가능성 제고 (Make the EITI Reports more understandable)

현지국의 채굴산업 관련 법제도와 재정시스템을 보다 잘 파악하고 채굴산업의 사회경제적 영향력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EITI Standard는 보고서가 채굴산업 생산량 정보(production data), 현지국 정부 재정체제(fiscal regime), 관련법제, 계약 체계(contractual framework), 채굴산업 수입의 국가예산 반영 방법, 국가와 지방정부의 수입금 배분, 광권과 광권소유자(license holder), 국영기업(state-owned company)의 역할에 대한 정보 등 폭넓은 관련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자원개발프로젝트의 실소유주(beneficial owner)와 관련된 정보도 공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나. 각국 상황을 반영한 적실성있는EITI (Making EITI more relevant in each country)

EITI Standard에 의하면, EITI 이행국은 EITI를 통하여 성취하고자 하는 정책목표와 방법에 대하여 업무계획(work plan)을 제시하도록 요구된다. 업무계획은 당해 이행국가의 구체적 상황에 적합한 EITI실행을 위한 범위를 설정한 것이다. 업무계획의 작성과 제출을 통하여 현지국 정부가 EITI를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이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접근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행

국 정부는 다수이해관계자그룹(Multi Stakeholder Group: MSG)과 협력하여 EITI 보고대상이 되는 기업의 범위와 대정부 지출금의 범위를 위한 상당성(materiality)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 더 정확한 정보의 공개 (Better and more accurate disclosure)

EITI Standard는 보고서에 공개되는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준수요건(Requirement)을 강화하였다. 이에 따르면 지출금을 총액(aggregated)기준 보다 각 기업 단위로 분리된(disaggregated)기준에 따라 정리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수입금 흐름(revenue stream), 지출형태(payment type) 별 공개도 규정하고 있다. 프로젝트 단위 정보공개는 미국 SEC 규정 및 EU Directive 규정에 부합하는 것을 전제로 요구된다. [4)]

라. 최소Requirement을 넘어서는 국가들에 대한 인센티브 (Recognising countries that go beyond the minimum)

EITI Standard는 EITI를 보다 적극적, 혁신적으로 시행하는 국가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현지국에 맞는 보다 유연한 인증(validation) 체제를 제시하고 있다. EITI이행국가들이 EITI Requirement를 충족하고 있는지 검증하는 체계를 이행국가의 실행수준에 맞게 유연화하여 이행국들이 효과적인 EITI시행에 보다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한다.

마. 관련 규정의 명확성 제고 (A clearer set of rules)

EITI Standard는 기존의 EITI Ruler과 Policy Note를 반영하면서도 보다 간결한 7개의 Requirement로 재편성하여 관련 규정이 간명하고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제정되었다.

---

4) http://www.ey.com/Publication/Disclosing_government_payments_for_natural_resource_extraction/

3. EITI Standard의 구조와 내용

(1) EITI Standard의 구조

EITI Standard는 EITI 의 시행과 관련된 내용 (Part 1: Implementation of the EITI Standard) 및 EITI체제 운영에 관한 내용 (Part 2: Governance and Management)으로 구성된다. Part 1은 EITI Principle (EITI원칙), EITI Requirement (EITI 준수요건), Validation Guide (인증지침), Protocol: Participation of civil society (시민사회 참여에 관한 프로토콜)를 포함하며, Part 2는 EITI조직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Articles of Association (정관), EITI Openness Policy (EITI공개성 정책), Draft EITI Constituency Guideline을 담고 있다.

[The EITI Standard의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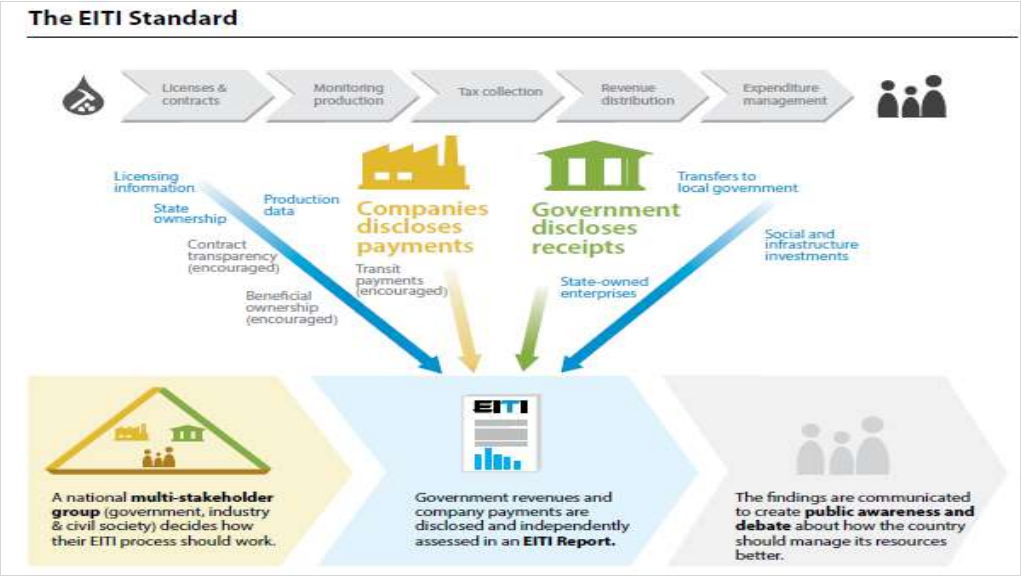

(source: EITI Standard)

(2) EITI Standard의 주요내용

가. EITI Principle (EITI원칙)

2003년 영국정부가 주최한 런던 랭카스터하우스 회의에서 각국 정부, 기업, 시민사회 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stakeholder)들이 모여 채굴산업에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원칙을 담

은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이 원칙은 천연자원에서 창출된 부는 해당국가의 모든 국민들이 누려야 한다는 대전제하에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천연자원의 적정한 관리가 필요하며, 채굴산업에 있어서 지출금과 수입금에 대한 투명성 제고는 현지국 국민의 복지에 기여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채굴산업 투자자에게도 이익이 됨을 강조하고 있다. EITI원칙은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관심을 갖고 지향해야할 목표와 의지에 대한 기본적 방향을 선언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12개 EITI Principle에 대한 자세한 원문 내용은 아래 표에 제시되어 있다.

[EITI Principles]

1	We share a belief that the prudent use of natural resource wealth should be an important engine for sustainable economic growth that contributes to sustainable development and poverty reduction, but if not managed properly, can create negative economic and social impacts.
2	We affirm that management of natural resource wealth for the benefit of a country' s citizens is in the domain of sovereign governments to be exercised in the interests of their national development.
3	We recognise that the benefits of resource extraction occur as revenue streams over many years and can be highly price dependent.
4	We recognise that a public understanding of government revenues and expenditure over time could help public debate and inform choice of appropriate and realistic option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5	We underline the importance of transparency by governments and companies in the extractive industries and the need to enhance public financial management and accountability.
6	We recognise that achievement of greater transparency must be set in the context of respect for contracts and laws.
7	We recognise the enhanced environment for domestic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that financial transparency may bring.
8	We believe in the principle and practice of accountability by government to all citizens for the stewardship of revenue streams and public expenditure.
9	We are committed to encouraging high standards of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in public life, government operations and in business.
10	We believe that a broadly consistent and workable approach to the disclosure of payments and revenues is required, which is simple to undertake and to use.
11	We believe that payments' disclosure in a given country should involve all extractive industry companies operating in that country.
12	In seeking solutions, we believe that all stakeholders have important and relevant contributions to make – including governments and their agencies, extractive industry companies, service companies, multilateral organisations, financial organisations, investors and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나. EITI Requirement (EITI준수요건)

EITI Requirement은 EITI를 시행하는 국가들이 준수해야 하는 요구사항이다. 기존의 EITI 규정체제는 EITI Criteria, EITI Requirement, 2011 EITI Rules의 EITI Policy Notes 등 여러 형태로 분산 규정되어 있어 내용의 일관성, 명확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내용을 포괄하는 7개의 준수요건(Requirement)으로 간명하게 규정한 것이다.

EITI 이행국(Implementing Country)은 EITI 후보국가(Candidate Country)와 EITI 준수국가(Compliant Country)로 분류된다. EITI 후보국의 지위를 갖기 위해서는 신청국가는 Requirement 1.1 - 1.4에서 규정하는 준수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아래에서 서술하는 가입(sign-up)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내용을 후보국지정신청서에 기재하여 EITI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후보국지위를 인정 받은 국가는 18개월 이내에 EITI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인증(validation)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인증절차에서 Requirement 1 - 7에서 규정한 내용을 준수하고 있음이 인정되면 EITI 준수국가(Compliant country)의 지위를 승인받게 된다.

EITI Requirement은 이행국이 준수해야할 최소요건(minimum requirement)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 EITI이행국들은 최소요건을 넘어서 관련 이해관계자(stakeholder)들이 적정하다고 합의하는 수준에서 정보ㅜ공개을 시행하기를 권장하고 있다.

EITI 이행국가에게 요구되는 7개 Requirement과 개략적인 내용은 아래 표에서 제시되어 있다.[5)]

[EITI Requirements의 주요 내용]

1	다수이해관계그룹에 의한 효과적 감독 *(Effective oversight by the multi-stakeholder group).*
	The EITI requires effective multi-stakeholder oversight including a functioning multi-stakeholder group that involves the government, companies and the full, independent, active and effective participation of civil society. The key elements of this requirement include: (1.1) government commitment; (1.2) government oversight; (1.3) the establishment of a multi-stakeholder group; and (1.4) an agreed workplan with clear objectives for EITI implementation, and a timetable that is aligned with the deadlines established by the EITI Board (1.6-1.8).

5) EITI각 요건(Requirement)의 세부 내용은 https://eiti.org/document/standard참조.

2	EITI 보고서의 적시 발간 (Timely publication of EITI Reports)
	EITI Reports are most useful and relevant when published regularly and contain timely data. Requirement 2 establishes deadlines for timely EITI Reporting
3	이행국 채굴산업에 대한 체계적 이해가 가능한 맥락화된 정보의 공개 (EITI Reports that include contextual information about the extractive industries)
	In order for EITI Reports to be comprehensible and useful to the public, they must be accompanied by publicly available contextual information about the extractive industries. This information should include a summary description of the legal framework and fiscal regime (3.2); together with an overview of: the extractive industries (3.3); the extractive industries' contribution to the economy (3.4); production data (3.5); state participation in the extractive industries (3.6); revenue allocations and the sustainability of revenues (3.7 -3.8), license registers and license allocations (3.9-3.10); and, any applicable provisions related to beneficial ownership (3.11) and contracts (3.12). The multi-stakeholder group should agree on who prepares the contextual information for the EITI Report (3.1).
4	채굴산업 관련 정부수입에 대한 전체적 공개와 보고 요건이 되는 자원개발회사의 대정부 지출금에 대한 공개 정보를 담은 종합적 EITI 보고서의 작성 (The production of comprehensive EITI Reports that include full government disclosure of extractive industry revenues, and disclosure of all material payments to government by oil, gas and mining companies.)
	An understanding of company payments and government revenues can inform public debate about the governance of the extractive industries. The EITI requires a comprehensive reconciliation of company payments and government revenues from the extractive industries. Requirement 4 outlines the steps that the multi-stakeholder group needs to consider in order to ensure that the EITI Report provides a complete account of these payments and revenues. Section 4.1 sets out the requirements related to the types of payments and revenues to be covered in the EITI Report. Section 4.2 specifies which companies and government entities, including stateowned enterprises, should be required to report.
5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신뢰성있는 확인절차의 도입 (A credible assurance process applying international standards.)
	Requirement 5 seeks to ensure a credible EITI reporting process so that the EITI Report contains reliable data. The EITI seeks to build on existing audit and assurance systems in government and industry and to promote adherence to international practice and standards. The multi-stakeholder group is required to appoint an Independent Administrator to reconcile the data submitted by companies and government entities (5.1). Section 5.2 outlines the issues that the multi-stakeholder group and the Independent Administrator need to consider in agreeing the Terms of Reference for the reconciliation. This includes the assurances that need to be provided by the reporting entities. Section 5.3 empowers the Independent Administrator to assess the comprehensiveness and reliability of the data and to make recommendations for the future. The EITI Report must be endorsed by the multi-stakeholder group (5.4).

6	EITI보고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와 공중의 접근가능성 확보 및 공개토론 *(EITI Reports that are comprehensible, actively promoted, publicly accessible, and contribute to public debate.)*
	Regular disclosure of natural resource revenue streams and payments from extractive companies is of little practical use without public awareness, understanding of what the figures mean, and public debate about how resource revenues can be used effectively. Requirement 6 ensures that stakeholders are engaged in dialogue about natural resource revenue management.
7	다수이해관계그룹에 의한 EITI 시행 성과의 평가와 후속조치 (The multi-stakeholder group to take steps to act on lessons learned and review the outcomes and impact of EITI implementation.)
	EITI Reports lead to the fulfilment of the EITI Principles by contributing to wider public debate. It is also vital that lessons learnt during implementation are acted upon, that discrepancies identified in EITI Reports are explained and, if necessary, addressed, and that EITI implementation is on a stable, sustainable footing.

다. EITI 가입(Sign-up)과 인증(Validation)

A. EITI 가입(Sign-up)

EITI 를 시행하려는 국가들은 EITI 후보국 (Candidate) 신청 전에 다음의 단계를 거쳐야한다. 가입단계(Sign-up step)로 표현되는 이 절차는 EITI 준수요건 (Requirement) 1.1 부터 1.4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으로, 이 준수요건을 충족한 것이 인정되어야 후보국 신청을 할 수 있다.

[EITI 가입단계(Sign-up steps)]

1.1	The government is required to issue an unequivocal public statement of its intention to implement the EITI.
1.2	The government is required to appoint a senior individual to lead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EITI.
1.3	The government is required to commit to work with civil society and companies, and establish a multi-stakeholder group to oversee the implementation of the EITI.
1.4	The multi-stakeholder group is required to maintain a current workplan, fully costed and aligned with the reporting and Validation deadlines established by the EITI Board.

위의 준수요건을 충족한 EITI 가입신청국은, 가입 단계(Sign-up step)을 이행하기 위하여 수행한 활동내용과 일시, 이를 증명할 근거를 첨부한 후보국신청서(EITI Candidature

Application)를 EITI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때 후보국지정 신청국의 정부는, 시민사회(civil society) 등 다수이해관계자그룹(Multi-Stakeholder Group: MSG)의 후보신청에 대한 지지(support) 내용과 연락처(contact detail)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ITI 이사회는 후보국지정신청서 접수 후 EITI 준수요건 1.1-1.4에서 규정한 내용이 충족되었는지 검토를 하게 된다. 검토과정에서 국제사무국(International Secretariat)이 신청국의 이해관계자들과 연락해서 가입신청과정에서 위의 준수요건 충족에 대한 활동내용을 확인하고 그들의 견해를 청취한다. 이러한 의견청취 과정에는 정부(supporting governments), 국제시민사회단체(international civil society group), 기업(supporting companies), 여타 지지단체 및 투자자(supporting organisations and investors)로부터의 의견도 구한다.

EITI 국제사무국은 후보국신청과 관련한 주요 쟁점들을 정리하기 위해 신청국 정부가 EITI 시행과 관련하여 지정한 EITI담당 고위관계자(senior individual)와 긴밀히 협력한다. EITI 이사회 산하의 후보국신청 관련 소관위원회 (Outreach and Candidature Committee)는 후보국지정신청을 받아들여야할 지에 대해 검토하여 EITI 이사회에 의견을 제시하며, EITI 이사회가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6)]

EITI 이사회가 후보국지정신청을 받아들여 후보국으로 지정하면, 첫 번째 보고서(EITI Report) 발간과 인증(Validation)과정과 관련한 기한을 결정한다. 기본적으로 첫 EITI Report는 EITI 후보국으로 승인된 날로부터18개월 내에 발간되어야 한다. EITI 후보국은 승인일로부터 2년 반 내에 인증(Validation)절차에 착수하여야 한다. 인증단계에서 후보국이 EITI Requirement를 모두 충족하였다는 것이 인정되면, 이사회 결정을 통하여 EITI 준수국(Compliant country)으로 승격된다. EITI 준수국가는 승인 후 매 3년마다 인증과정을 거쳐야 한다.

후보국이 인증단계에서 준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EITI준수국의 지위를 인정받니 못하면, 일정 기간동안(additional period) 동안 EITI 후보국 지위를 유지하면서 3년 반내에 인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EITI 후보국 지위는 5년이상 유지될 수 없다.

6) EITI 이사회는 EITI board meeting에서 후보국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되며, 이사회 일정 사이의 공백기간이 길다면, board circular를 통해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B. 인증 과정(Validation Process)

인증(Validation)은 EITI시행과정에 있어서 핵심적인 절차로서, 인증과정을 통하여 EITI 이행국들이 EITI 준수요건 (Requirement)을 충족하고 있는지, EITI 준수국가가 EITI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지속적인 이행 노력을 기울이는지에 대해 평가한다.

인증(Validation)절차는 국제사무국이 지정하는 인증평가자(Validator)가 외부에서 독립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으로, 이행국이 EITI Standard에 부합하도록 준수요구 내용을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하고 평가 내용을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 한다. 인증과정은 다수이해관계그룹(MSG)의 역할과 이들과의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증과정에서 이해관계그룹의 의견을 반영하게 된다. EITI 다수이해관계그룹은 인증과정을 통해 해당국에서의 EITI 시행 효과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EITI 준수요건 충족에 대한 견해를 개진하며 필요한 경우 효과적인 EITI 시행을 위한 제안 기회를 갖게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작성된 인증보고서(validation report)는 EITI 요건 준수여부에 대한 평가 뿐만 아니라, EITI 시행에 따른 영향(impact), 시행에서 얻은 교훈, 이해관계자들이 제시하는 의견, EITI의 향후 시행에 대한 권고사항을 포함하게 된다.

인증평가자에 의해 보고서가 작성되면, EITI 이사회 산하의 인증위원회(Validation Committee)는 최종 인증보고서(final validation report)를 검토하고 다수이해관계그룹(MSG)로부터 인증보고서와 관련된 의견을 수렴한다. EITI이사회는 최종 인증보고서를 분석 평가하고 해당 국가가 EITI준수국가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한다. 이사회는 인증보고서에 기초하여 EITI 이행과 관련된 추가 조치에 대한 권고를 할 수 있으며, 최종 인증보고서가 해당국의EITI Standard준수여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면 추가 인증절차를 진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Validation은 EITI 이행국의 이행성과를 평가할 뿐만 아니라, 해당국 정부 및 이해관계그룹과의 의사소통의 과정이 된다. 이를 통하여 EITI실행과정에서 얻게되는 교훈을 공유하고 EITI가 구현하고자 하는 목표 실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인증절차를 통하여 EITI에 참여하는 이행국 정부들이EITI의 준수요건에 부합하는 투명성 제고노력을 함으로써 EITI체제의 국제적 공조체제를 형성하게 된다.

[인증절차 (Steps in the Validation process)]

1	다수이해관계그룹에 게 인증절차 일정의 통지
	The International Secretariat informs the multi-stakeholder group about the schedule for Validation.
2	인증평가자의 지정
	Procurement of a Validator
3	인증절차 진행
	Validation.
4	인증보고서초안 작성
	The Validator produces a draft Validation Report.
5	최종인증보고서 작성
	The Validator produces a final Validation Report.
6	인증보고서에 대한 EITI 이사회의 검토
	The EITI Board analyses the final Validation Report
7	이의제기 절차
	Appeals.

(Source: EITI Standard)

(3) EITI 조직구조와 운영

EITI 체제는 선언적 원칙에서 시작하여 구체적 규범과 절차를 포함하는 EITI Standard로 발전하여 왔으며, 그 과정에서 EITI의 조직구조와 운영체제도 발전해왔다. EITI Articles of Association(정관)은 EITI의 조직과 운영구조를 규정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EITI회의(Conference), EITI이사회(Board), 국제사무국(International Secretariat)으로 구성된다. 다수이해관계자들(MSG)이 참여하여 EITI 목표 실현을 위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국제적 포럼을 제공하기 위해 적어도 3년마다 Global Conference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EITI참여국(implementing and supporting countries), 기업(companies, including institutional investors), 시민사회단체(civil society organisation)가 투표권을 갖는 소규모의 Members' Meeting을 개최한다. 이 Meeting의 주요 기능는 EITI 이사회 구성원을 선출하는 것이다.

EITI 이사회는 EITI참여국, 시민사회, 기업 등 서로 다른 성격의 참여그룹(Constituency)

을 대표하는 20명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져있고, 이사회의장(Chair)은 독립적이어야 한다. EITI 이사회는 EITI의 활동 전반을 감독하며 주요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 이사회는 EITI 체제가 더욱 실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하며, EITI 이행국의 규정준수 여부에 대한 감독 뿐만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EITI체제를 형성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계획의 수립과 검토업무를 수행한다. 이사회 기능의 수행을 위해 연간 수차례의 이사회를 개최하며, 이사회 승인을 요하는 안건에 관한 Board circular, 이사회 산하 위원회를 통해 활동을 한다. EITI 국제사무국(International Secretariat)은 EITI의 일상적인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세계은행(World Bank)도 EITI체제의 시행에 기여하고 있는데, EITI와 World Bank 사이에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하여, 개도국의 EITI 시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 지원의 상당부분이 World Bank의EITI Multi-Donor Trust Fund를 통해 이루어진다.

[EITI 지배구조 (EITI governance struc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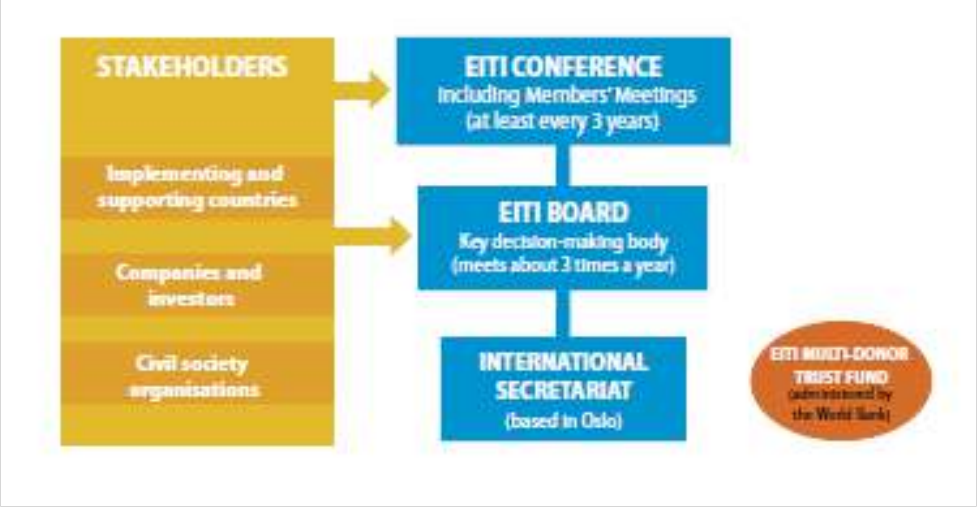

(Source: EITI Standard)

II. EITI 의 현황과 참가자

1. EITI 이행국가(Implementing Countries) 현황

EITI 는 2009년 이후 빠르게 성장하여 왔고, 2014년 11월 현재48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 31개국이 EITI준수국가 (Compliant country) 이며 17개국이 EITI 후보국가(Candidate country)의 지위에 있다. 또한 17개국 정부, 91개 기업, 94개 기관투자자(Institutional investors), 8개의 국제시민사회단체(civil society organisations), 21개의 파트너단체(partner organisations)가 공식적으로 EITI를 지지하고 있다. 지리적으로 EITI Membership은 아프리카를 넘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로 확장되어 왔으며, 최근 OECD 국가들도 EITI에 참여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이 후보국이 되었으며 프랑스 , 독일 등이 향후 EITI 참여 의지(commitment to implement)를 표명한 바 있다.

EITI가 출범한 이래로 35개 이행국이200개 이상의EITI Report를 발간하여 채굴산업 관련 정부 수입금과 기업의 대정부 지출금 내역을 밝히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공개된 정부 수입금 총액은 US$ 1,332 billion에 이른다. 2014년 10월 차드(Chad)와 인도네시아가 후보국가에서 준수국가로 승격되었고, 2014년 8월 세이쉘(Seychelles), 2014년 10월 콜럼비아와 영국이 후보국이 되었다.[6)]

EITI에 참여한 국가들 가운데 인증과정에서 EITI 이사회 검토 결과EITI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 적도기니(Equatorial Guinea)와 가봉(Gabon)은 EITI 이행국(implementing country) 지위를 상실한 바 있으며, 중앙아프리공화국(Central African Republic)은 EITI준수국가 지위가 잠정적으로 정지된 (temporarily suspended)되었다. EITI 준수국가 와 후보국가에 대한 2014년 11월 현재 현황은 아래 도표에 정리되어되어 있는 바와 같다.

[EITI 준수국과 후보국 현황]

구분		국가명
EITI 준수국가 (Compliant countries)	31	Albania, Azerbaijan, Burkina Faso, Cameroon, Chad, Côte d' Ivoire,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Ghana, Guatemala, Guinea, Indonesia, Iraq, Kazakhstan, Kyrgyz Republic, Liberia, Mali, Mauritania, Mongolia, Mozambique, Niger, Nigeria, Norway, Peru, Republic of the Congo, Sierra Leone, Tanzania, Timor-Leste, Togo, Yemen, Zambia
EITI 후보국가 (Candidate countries)	17	Afghanistan, Colombia, Ethiopia, Honduras, Madagascar, Myanmar, Papua New Guinea, , São Tomé and Príncipe, Senegal, Seychelles, Solomon Islands, Tajikistan, The Philippines, Trinidad and Tobago, Ukraine, United Kingdom,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ource: https://eiti.org/countries)

[EITI 이행국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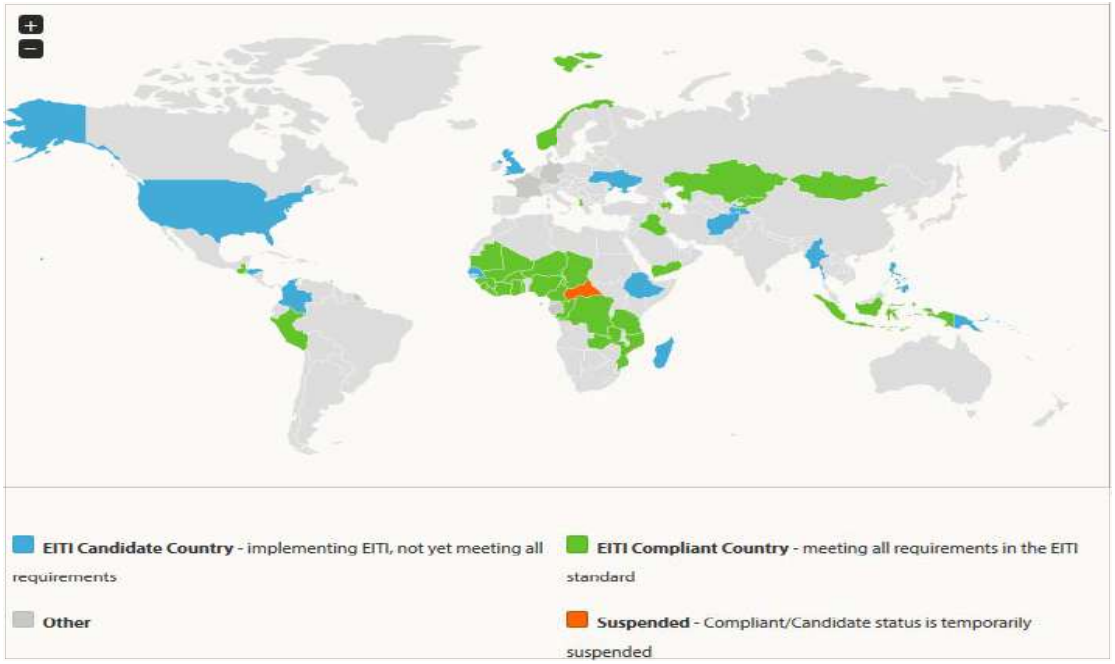

(Source: https://eiti.org/countries)

2. 이해관계자 그룹 (Stakeholders)

EITI체제는 정부, 기업, 기관투자자, 시민사회단체, 파트너기관 등으로 구성된 다수 이해관계자그룹(Multi-Stakeholder Group: MSG)의 연합(coalition)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이들 이해관계자그룹은 이사회를 통하여 EITI 이행국에서의 채굴산업관련 투명성의 확보와 EITI가 추구하는 정책적 목적의 실현을 위한 감독에 참여하며, 국제적으로도 EITI체제에 대한 수용도가 높아지도록 노력한다. EITI는 참여하는 다수 이해관계그룹간의 소통의 장이 되며, EITI를 시행하는 정부와의 관계에서 이해관계그룹의 의견이 전달되도록하는 제도적 장치를 제공한다. EITI의 이해관계자그룹을 형성하는 구성원 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7)]

(1) EITI 지지국가(Supporting Countries)

2014년 11월 현재 17개국의 정부가 EITI 지지국가(supporting country)이다. EITI지지국가는 직접 EITI를 시행하지는 않지만 EITI 원칙에 대한 지지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EITI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시행을 돕기위한 정치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제공한다[8)] EITI 지지국가가 할 수 있는 활동에는 국제회의 또는 다자간 포럼에서 EITI이 대한 인식과 수용성을 높일수 있도록 노력하고, 자국 기업들이EITI지지기업으로 참여하도록 권장한다. 또한 자국내 채국산업에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이들 지지국가는 기업 및 시민사회와 협력하면서 외교적, 상업적 채널을 통해 부존자원이 풍부한 국가들이 EITI를 시행하도록 유도하는 노력을 하기도 한다.[9)] EITI 지지국가는 자원보유국에 대한 직접적 지원뿐만 아니라 세계은행이 설립한 Multi-Donor Trust Fund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도 있다. [10)]

(2) EITI지지기업(Supporting Companies)

91개의 세계적인 석유, 가스, 광업기업 들이 EITI 체제를 지지하고 있으며, 국제적 차원 및 국가단위 수준에서 EITI의 확산과 시행을 위해 협력한다. EITI 지지기업(Supporting company)이 되기 위해서는 EITI Principle을 지지함을 공표하고, EITI Supporting Company Form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지지기업은 EITI체제의 국제적 운영에 재정적 기여를 하게 되는데, 매년 제공하는 기여금(financial contribution) 액수는 회사의 시가총액(market capitalisation)이 USD 100억 이상인 경우는 미화 6만 달러/년, 시총 USD 50억에서 100억 사이인 회사는 미화 3만5천 달러/년, USD 50억 이하인 회사는 미화 1만 달러 /년의 기여금을 EITI제공한다.

EITI 지지기업이 된다고 하여 EITI 체제하에서 추가적인 정보공개 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EITI의 확산과 시행을 위한 노력을 지원하고 지지하는 활동에 참여한다. EITI 지지기업이 됨으로써 자원개발 현지국의 시민사회 및 이해관계자와 관계를 개선하고, 회사의 평판을 제고하며, 투명성제고를 위한 영역에서 리더쉽을 보여줄 수 있다.[11] 최근에는 채굴산업 기업뿐만 아니라 비채굴산업 기업들도 EITI지지기업으로 참여하기도 한다.

(3) 기관투자자(Institutional Investors)

EITI 체제는 기본적으로 채굴산업 기업들의 정보공개와 연계된 것이나, 기관투자자들도 EITI에 관심을 갖고 지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현재 80개 이상의 글로벌 투자기관이 EITI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있으며 이들이 운영하는 자산 규모을 총액으로 보면 미화19 조 달러에 달한다. [7] EITI 지지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채굴산업 투명성에 관한 투자자 성명서(Investors' Statement on Transparency in the Extractives Sector)"에 서명하고, EITI원칙을 지지하는 의사를 해당기관의 웹사이트에 공표하여야 한다. 또한 EITI의 국제적 운영에 재정적 지원을 하는 차원에서 연산 USD 2,500의 자발적 기여금을 제공한다.[12]

EITI지지 투자기관인Allianz Global Investors의 ESG글로벌 공동대표이며 EITI이사회 멤버인 David Diamond는 투자 현지국의 불투명한 지배구조가 정치, 경제, 사회적 불안정성을 야기하여 투자위험을 증가시키게 됨을 언급하면서, 채굴산업의 경우 장기간의 막대한 자본투자가 요구되기 때문에 EITI가 현지국의 불안정성을 감소시킴으로써 투자환경을 개선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EITI 이행국가에서 채굴사업을 운영하는 회사들이 장기적으로 더 큰 이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된다고 언급하였다. [13]

(4) 시민사회 (Civil Society)

EITI체제의 실시에 있어서 신청국 업무계획의 수립단계에서부터 인증과정에 이르기까지 시민사회단체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 한다. 이들 단체는 국제적 차원, 개별 국가 차원에서 다수이해관계자 그룹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EITI의 확산 및 시행, 관련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과 교육 훈련 등 의 지원을 제공한다.

현재 Catholic Agency for Overseas Development (CAFOD), Global Witness, Natural

7) https://eiti.org/supporters/institutionalinvestors

Resource Governance Institute, Open Society Institute, Oxfam, Publish What You Pay Coalition, Secours Catholique (Caritas), Transparency International과 같은 국제적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400개 이상의 NGO들이 EITI를 지지하고 있으며, 이들은 직접적으로 또는 Publish What You Pay campaign을 통해 EITI에 참여하고 있다.

(5) 파트너단체(Partner Organisations)

EITI는 세계은행(World Bank),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African Development Bank, Asian Development Bank, European Investment Bank 와 같은 개발은행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들은 기술 및 재정적 지원을 EITI 이행국에 제공하고 EITI의 확산을 위한 노력 을 지지한다. G8, G20, EU집행위원회도 EITI를 지지하면서 정책적, 제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14].

III. EITI 관련 주요 해외입법- 미국 과 유럽연합

1. 미국의 입법: Section 1504 of Dodd-Frank Act

(1) EITI가입 배경 과 과정

1977년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가 제정된 이후 미국은 채굴산업에서의 투명성 제고와 반부패(anti-corruption) 운동을 지지해왔다. 2011년 9월 오바마 대통령은 뉴욕에서 개최된Open Government Partnership (OGP)에서 EITI의 시행계획을 공표하였으며, 공공자원 관리에 관한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National Action Plan을 발표하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천연자원채굴에서 발생하는 수입이 납세자들의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EITI를 시행할 것을 제시하며, 글로벌 스탠다드로서의 EITI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산업계, 시민사회와 함께 정보공개와 채굴산업 재정수입 관련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발 계획을 수립할 것을 밝혔다.[15]

2013년 미국정부의 내무장관(Secretary of the Interior)이 EITI 시행을 위한 고위책임자(Senior U.S. official responsible for EITI)로 임명되었다. 다수이해관계그룹(multi-stakeholder group: MSG)인 US EITI Advisory Committee는 2013년 2월 출범하여 2013년 12

월 19일에 EITI 후보국지정신청서 (Candidature application)을 EITI국제사무국에 제출했다. 이 신청서에는 미국의 EITI 업무계획(work plan)과 MSG member들의 명단을 담고있었다. 미국의 EITI 후보국지정 신청에 대한 EITI이사회 심의결과 2014년 3월 19일 미국은 EITI 후보국(Candidate) 지위를 승인받았다.

미국은 EITI 후보국가로서 정해진 기간내에 첫 EITI Report를 발간해야 하고, 인증(Validation) 절차를 밟아서 모든 EITI Requirement를 충족하였음이 인정되어야 EITI준수국가로 승격되게 된다. [16] 미국의 EITI 시행관련 주요 기준시점은 아래 표에 제시되어 있다.

[미국의 EITI 이행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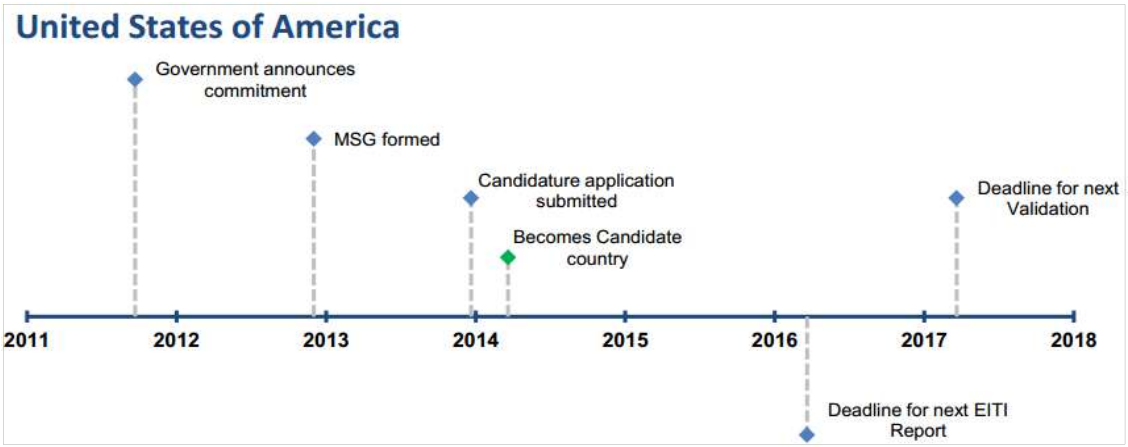

(source: https://eiti.org/united-states-america)

(2) 관련입법

가) Section 1504 of the Dodd-Frank Act 의 제정

미국의회는 2010년 7월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Dodd-Frank Act: 금융개혁법)를 의결하였는데, Dodd-Frank Act는 기본적으로 글로벌금융위기에 대응하여 금융기관 규제에 대한 개혁을 목적으로한 입법이었으나 비금융부문에 대한 규정도 포함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Section 1502 부터Section 1504가 채굴산업과 관련한 조항인데, Section 1504 (Disclosure of Payments by Resource Extraction Issuers)가 채굴산업과 관련한 자원개발기업의 지출금 내역 공개 의무에 관한 법 규정이다.

Section 1504의 기본내용은 미국증권거래위원회(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에 등록되어 연차 보고의무가 있는 석유, 가스, 광업회사들이 채굴사업관련 외국정부 및 미국 연방 정부에 지불한 지출금 매년 SEC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Cardin-Lugar Transparency Amendment로 호칭되기도 하는 Section 1504 of Dodd-Frank Act에 따라 미국 의회는 Securities Exchange Act 1934에 Section 13(q)를 추가 하였는데, 이 규정은 상업적으로 석유, 가스, 광물 개발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하여금 대정부 지출금 내역을 정부 단위, 프로젝트 단위, 지출형태 별로 보고하도록 하는 규칙(Rule)을 제정하도록 SEC에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입법과 관련하여 EITI의 전 IAG(International Advisory Group) 의장인 Peter Eigen은 Section 1504 of Dodd-Frank Act가 EITI의 시행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평가하였다. 국제적 시민사회 단체들도 Section 1504에 대하여 강한 지지를 표명하였는데, SEC에 등록된 메이저 자원개발기업의 대정부 지출금 내역을 상세히 공개하게 함으로써 EITI체제에 참야하고 있지 않는 비이행국 정부가 Section 1504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하는 압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았다. [17)]

나) Section 1504의 주요내용:

- 보고의무 적용 회사: Section 1504와 관련하여 보고의무가 있는 회사는 자원채굴기업으로서 1934 Securities Exchange Act에 의해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filing)해야하는 의무가 있으며 석유, 가스, 광물 자원개발 활동을 상업적으로 수행하는 회사(resource extraction issuer)이다.[18)]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미국 회사와 외국 회사가 대상이 되며, 모회사 (parent company)의 연결재무재표에 포함되는 자회사(subsidiary)도 포함한다. 예를 들어ExxonMobil의 경우 차드(Chad)에서 운영되는 Esso Exploration and Production Chad Inc.와 나이지리아에서 운영되는Esso Exploration and Production Nigeria Limited.와 같은 자회사들을 지출금 내역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19)]

- 보고대상이 되는 관련 개발행위: 개발대상이 되는 행위는 탐사, 채굴, 가공, 수출 및 석유, 가스, 광물과 관련한 기타 주요 활동을 포괄하며 이러한 활동을 위한 라이선스 획득과 관련한 행위 등을 포함한다. 구체적 범위는 SEC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 보고대상이 되는 대정부 지출금에서 상대정부의 범위: 자원개발기업이 지불하는 지출금의 상대방이 되는 정부의 범위가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따라 보고의무 대상이 달라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정부의 경우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관계부처, 기타 정부기관 (agency, instrumentality)을 포괄한다. 외국정부가 소유한 회사 및 외국정부가 50%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회사도 포함된다. 보고대상이 되는 지출금 상대방 정부에 미국연방정부도 포함되나, 미국 주정부(state-government)는 제외된다.[20)]

- Section 1504가 통과된 이후 2년간의 논의를 거쳐2012년 8월 SEC는 Section 1504의 시행을 위한 최종 규칙 SEC Rule 13q-1을 발표하였다. [8)] 당시 발표된SEC Rule에 의하면 보고의무가 있는 회사들은 2013년 9월 30일 이후부터 새로운 규칙에 따라야 하며, 회계연도(fiscal year)가 끝난 후 150일 안에 보고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래에서 서술하는 바와 같이 API를 포함한 미국의 자원개발회사 관련 단체들이 SE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Section 1504에 따른 보고는 이루어 지지 않았다.[21)]

(3) Section 1504관련 SEC소송 과 EITI에 미치는 영향

2012년 10월 10일 American Petroleum Institute (API), Chamber of Commerc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dependent Petroleum Association of America, The National Foreign Trade Council는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를 상대로 U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에서 소송을 제기하였다.[9)] Section 1504관련 SEC 규정을 무효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API 등 자원개발회사를 대변하는 원고측은 채굴산업 관련 대정부 지출 내역을 대외적으로 공시하도록 규정한 SEC Rule 의 부당함을 주장하면 SEC를 법원에 제소하였다.

원고측의 주장은 SEC가 Section 1504이 규정한 의무의 범위를 넘어서는 대외적인 공시의무를 채굴산업 기업들에게 부과하였으며, 언론 출판의 자유에 관한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공시의무 부과에 있어서 공시대상이 되는 대정부 지출금의 범위에 대해 예외규정을 두지 않아 지출금이 공개되는 상대방 정부 국가에서 이러한 내용의 공개를 금지하는 법이 있는 경우 해당국가의 법제와 충돌 가능성 등이 있어 공시의무가 있는 기업

8) http://www.sec.gov/rules/final/2012/34-67717.pdf
9) Am. Petroleum Inst. v. S.E.C., CIV.A. 12-1668 JDB, 2013 WL 3307114 (D.D.C. July 2, 2013)

에 과중한 부담이 지워졌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SEC는 증권거래법상 의무는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Section 1504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았더라도 대외적 공시를 상정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대외적 공시가 되지 않는다면 투명성제고를 위한 취지가 실현되지 못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예외조항을 두지 않은 것은 예외조항이 의무회피 수단으로 이용되어 법의 효력을 무력화 하고 궁극적으로 다른 국가들이 투명성 이니셔티브에 참여하는 동인을 약화시킬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22)]

이러한 양 당사자의 주장에 대하여 2013년 7월 2일, 법원은 SEC 규칙이 법의 취지를 벗어난 자의적(arbitrary)이고 불확실한(capricious) 규정이라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Section 1504의 규정을 문언적으로 해석하여 이 규정이 반드시 대외적 공시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원고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며 SEC가 법률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규칙을 제정하였다고 판단하였다.[10)] 예외규정을 인정하지 않은 규정에 대해서도 채굴사업 대상국의 법이 지출내역에 대한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에도 예외를 두지 않고 기업에게 공개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현지국 법 위반을 초래하여 해당기업의 법적책임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았들였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에 의해 SEC Rule 13q-1은 무효화되었으며, SEC는 법원의 판시 사항을 고려하여 개정된 규칙을 제정해야하는 상황이 되었다. [11)]

Section 1504관련SEC Rule 13q-1에 대한 미국법원의 판결은 EITI체제와 관련하여 많은 반향을 일켰는데, 국제적 시민사회단체이며 EITI Stakeholder인 Publish What You Pay Coalition (PWYP)[12)]은 미국 SEC Rule 에 대한 무효 판결은 EITI 원칙에 기반한 채굴산업 투명성 체제를 국제적으로 확장하려는 시민사회단체의 노력에 상당한 타격을 입혔다고 논평하였다.[23)] 특히 SEC 규칙의 무효를 주장하며 원고측으로 소송 진행을 주도한 API(American Petroleum Institute)의 회원인 Chevron, ExxonMobil, Royal Dutch Shell, BP, Statoil과 같은 기업이 EITI International Board의 멤버로 활동하고 있으며 상당수 API 회원기업들이 EITI Supporting Companies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EITI에 참여하는 자원개발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의지의 진정성에 대한 의문에 제기되었다. 또한 EITI의 준수요건(Requirement)을 개정을 논의하기 위해 조직된 EITI Strategy Review Process에 API 회원기업들이 동시에 참여하고 있어 EITI Strategy Review Process의 정당성과 EITI brand 신뢰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24)]

---

10) http://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32e122c5-33bd-4ee3-b200-61ea5b5f197f
11) Covington & Burling LLP, Note on EITI, 2014
12) Publish What You Pay and its members, as founders of EITI, have invested significant financial and human resources into the EITI Strategy Review Process, to develop and propose detailed improvements to the standard for consideration and negotiation by the EITI International Board.

채굴산업의 정보공개에 관한 Section 1504의 시행이 SEC 규칙에 대한 무효판결에 따라 지연되면서 관련 이해관계그룹은SEC가 새로운 규칙을 제정하기를 기다리는 상황이며, 현재 Section 1504에 따른 보고의무는 새로운 규칙제정 시까지 이행 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2014년 9월 미국 NGO들은 SEC가 Section 1504 시행을 위한 새로운 규칙을 신속히 제정, 발표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13)]

(4) Section 1504 of Dodd-Frank Act 와 비대칭적 의무의 이슈

Section 1504관련 SEC Rule 소송은 채굴산업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공개를 강조하는 SEC주장과 정보공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강조하는 자원개발기업의 주장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목표와 관련 규정의 현실적 적용에서 나타나는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긴장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Section 1504와 관련하여 또다른 관점에서 견해가 제기된 바 있는데, CDG(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Note에 의하면[25)] Section 1504에 따른 보고의무의 적용 범위에서 중국, 러시아 인도의 자원개발기업 가운데 상당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중국, 러시아, 인도에 기반을 둔 대규모 자원개발기업 가운데 상당수에 대해 Section 1504에 따른 지출금 보고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SEC 등록된 서구 메이저 자원개발회사들만 자원개발프로젝트 관련 해외 정부에 대한 지출금의 상세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이들 기업들이 글로벌 자원개발시장에서의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고 주장되었다. 따라서 Section 1504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러시아, 중국, 인도 등의 자원개발 기업들도 Dodd-Frank Act에 규정된 공시기준과 동등한 조건에서 사업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국제적, 보편적 규제가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26)] 이러한 문제는 EITI 이행국이 확대됨에 따라 해당국에서 채굴사업을 수행하는 기업들이 비차별적으로 공시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부분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데 결국 EITI 체제의 확산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EITI 체제의 보고기준도 상응하게 높아져야 함이 주장되는데 총액(aggregated)기준에서 company-by-company, project-by-project와 같은 분리(disaggregated)기준에 따른 보고 체제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도 이러한 제도적 적용범위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불균형의 해소를 위한 접근법으로서 제안되고 있다.

---

13) http://www.earthrights.org/media/oxfam-america-sues-sec-failure-issue-new-transparency-rules-required-dodd-frank-1504

Table 1. Reporting Requirements Vary Across Extractive Investors, Creating an Uneven Playing Field

	Companies That Have to Meet SEC or Similar Reporting Requirements	Companies That Do Not Have to Meet SEC or Similar Reporting Requirements
China	Sinopec (China Petroleum and Chemical Corporation). China National Petroleum Corporation (CNPC). CNOOC (China National Offshore Oil Corporation). Sinocham. Chinalco (Aluminum Corporation of China). Yankuang. China Minmetals Corporation. Shenhua Group Corporation. Shougang Group	Baosteel Group Corporation. Nanchuan/Bosai. China Machinery and Electrical Equipment Export and Import Company. China National Geological and Mining Corporation (CGM). China Non-Ferrous Metals Mining Group (CNMC). Jinchuan. Luanhe Industrial Group. Tanghua Iron and Steel. Wuhan Iron and Steel.
Russia	Rosneft. Lukoil.Gazprom. Norilsk Nickel. Severstal. Evraz. Rusal.	Surgutneftegaz. Gazprom Neft. Tatneft. Uralkali.
India	Essar Oil. Coal India.	Indian Oil Company. Reliance Petroleum Vendata Resources. Aditya Birla Group.

Source: CGD Note, 2011

3. 유럽연합(European Union)의 관련 입법

(1) EU 입법 개관

2011년 9월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는 자원개발회사가 채굴사업 관련하여 현지국 정부에 지급하는 지출급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EU Directive (EU지침)의 입법 계획을 승인하였는데, 이러한 EU 입법 계획안은 2010년에 미국에서 제정된 Dodd-Frank Act에 대응하여 이와 맥을 같이하는 EU법제를 정비하기 위함이었다.[27)]

2013년 6월 유럽의회 는 채굴산업과 임업(forestry industry)관련 기업의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을 제정하였다. 석유, 가스, 광업 회사 및 벌목회사(logging company)를 대상으로 관련 사업에서의 대 정부 지출금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EU 법제는 Chapter 10 "Report on Payments to Governments" of the EU Accounting Directive ("Accounting Directive")와 Article 6 "Report on Payments to Governments" of the revised EU Transparency Directive("Transparency Directive")의 형태로 입법화 되었다. [14)]

EU Accounting Directive는 EEA(European Economic Area)에 등록된 모든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의 재무정보 공개를 규율하는 EU 지침인데, Chapter10 of the Accounting Directive 는 EEA에 등록된 석유, 가스, 광물 등 자원개발회사와 벌목회사를 대상으로 대 정부 지출금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한다. 개정된 EU Transparency

14) http://www.publishwhatyoupay.org/sites/publishwhatyoupay.org/files/PWYP%20fact%20sheet%20on%20EU%20Accounting%20and%20Transparency%20Directives%20Nov2013.pdf

Directive의 Chapter 6에도 유사한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데, EU Transparency Directive와 Accounting Directive의 주요 차이점은 적용대상 기업의 범위에 있다. EU Accounting Directive는 EEA에 설립등록이 된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는데 대하여, EU Transparency Directive는 EEA의 등록여부를 불문하고 해외국가에 설립등록이 되어 있는 기업의 경우에도 EU법에 의해 규제되는 거래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listed on EU regulated markets)에는 공개의무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15] EU Accounting Directive와 Transparency Directives는 EU 회원국이 동일한 기준을 갖고 대상 기업들에게 정보공개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채굴산업 정보공개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제공한다.

EU Directive 는 지침(directive) 형태의 입법으로써 그자체가 직접적 효력을 갖지는 않으며, EU 회원국(member state)들이 각자 국내법(national law)으로 EU지침이 규정한 내용을 입법화하여야 직접적 효력을 갖게 된다. EU 지침에 규정된 내용은 지침 발효후24개월내에 각 회권국의 국내법으로 입법화 할 것이 요구되는데, EU Accounting Directive는 2015년 7월 20일, EU Transparency Directive는 2015년 11월 27일까지 각 회원국에서 국내법으로 입법하여야 한다.[16] 따라서 대정부 지출금 내역 공시의무와 관련된 기업들의 연차보고는 2016년 이후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2) EU Directive의 주요 규정내용[17]

- 공개대상 지출의 범위(category of payment): EU Directive 규정에 따른 공개대상이 되는 지출형태는 Tax, Royalty, Dividend, Bonus, License Fees, Production Entitlement, Payment for infrastructure improvement를 포함한다 (단 100,000 유로 이하의 지불금액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지출과 관련하여 각 정부에 대한 지급 총액, 지급형태에 따라 합계된 금액, 지출이 특정 프로젝트 단위로 이루어 진 경우 프로젝트별 지출 내역, 현물지출 (payment in kind)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정보공개 수준과 관련하여 국가 단위 뿐만 아니라 회사별 (company-by-company), 프로젝트 별 (project-by-project) 지출액을 공시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었다. [18]

- 공개의무 적용 회사: EU Directive에 따라 공시의무가 부과되는 회사는 채굴산업 또는

15) Ibid
16) Ibid
17) Chapter 10 of EU Accounting Directive를 중심으로 기술함.
18) Supra note 13

벌목산업에서 상업적 활동을 하고 있는 회사로서 EU법상 규제 대상이 되는 증권거래시장(EU regulated market)[19]에 상장된 회사이거나, 상장여부를 불문하고 EEA에 등록되어 있는 대형 회사(large undertaking)가 대상이 된다.[20][28] 또한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자회사가 채굴사업, 벌목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모회사는 자회사에 의한 지불금 내역을 보고서에서 밝혀야 한다. 위에서 기술한 EU 증권거래시장에 원 주식이 아닌DR (Depository Receipt)이 상장되어 있는 회사의 경우에도 공개의무를 부담한다.[21]

- 공개대상이 되는 지출금의 상대 정부기관은 자원개발사업 관련 지출금을 수취한 EU 또는 제3국의 중앙정부, 지방정부, 관계부처와 기관, 국영기업을 포함한 정부에 의해 통제 받는기업을 포괄한다.

EU Directive는 EITI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미가 있다.[29]

유럽에 기반한 메이저 자원개발회사들이 EU Directive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이들 기업에 대해 정부 지출금 내역에 대한 공개를 강제함으로써, EITI를 시행하지 않는 자원보유 현지국 정부가 수취한 수입금에 대해 간접적인 공개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 결과 EITI 미시행국 정부가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도록 압박할 수 있다

EU입법을 통해 공개의무 대상기업이 지출금 내역을 보다 신뢰성있고, 구체적인 지출금 내역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현지국 정부가 더 일관되고 적시성있는 EITI 보고서을 작성할 수 있도록 기여한다. 또한 에너지 광물 자원에 대한 국제적 경쟁이 격화되는 시기에 EU는 투명성제고를 공공선을 위한 목표로 인식하고 있으며, 자국회사들이 열린방식으로 비즈니스 하기를 원한다는 다는 신호를 보내게 된다. EU Accounting Directive와 Transparency Directive가 시행되면 EU 회원국이 동일한 기준을 갖고 대상 기업들에게 공시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채굴산업 정보공개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제공한다.

---

19) EU regulated stock market의 범위는 Markets in Financial Instrument Directive (MIFID)에 규정되어 있는데 런던, 파리, 프랑크푸르트, 암스테르담, 브뤼셀, 리스본 등 Euronext 증권시장이 포함된다. 특이사항은 영국 AIM market은 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다는 점이다.

20) 법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대차대조표상 자산규모가2000만 유로 넘거나, 4000만 유로 이상의 net turnover, 또는 직원 250명 이상 이라는 세 가지 기준 중 두 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대형 회사(large undertaking)을 대상으로 한다.

21)http://www.publishwhatyoupay.org/sites/publishwhatyoupay.org/files/PWYP fact sheet on EU Accounting and Transparency Directives Nov2013

3. 영국의 관련입법

(1) EITI가입

영국정부는 채굴산업 투명성 제고를 위해 많은 역할을 하여왔다. 2013년 G8 Leaders' Communiqué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로서 EITI Report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David Cameron총리는 영국이EITI 이행국이 되는 것을 포함하여 EITI 지지 노력을 강화할 것을 표명하였다. 이에 따라 영국정부는 2013년 7월 The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 를 EITI 시행의 책임부서로 지정하고 해당 부처 장관인 Jo Swinson을 영국 EITI 고위책임자로 임명하였다.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DFID)는 EITI 국제사무국과 World Bank의 채굴산업 Multi Donor Trust Fund를 지원하고 있다. 영국은 2014년 8월 EITI 국제사무국에 후보국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해10월 미얀마에서 개최된 International EITI Board meeting에서 EITI 후보국(Candidate)이 되었다. [30]

영국은 EITI 후보국으로 승인된 때로 부터 18개월이 되는 2016년 4월 이전에EITI Standard에 따라 첫EITI 보고서를 발간해야 하며, 30개월내에 인증(Validation)절차를 시행하여야 한다. 인증절차에서 모든 EITI 준수요건(requirement)를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면 EITI 준수국 (compliant country)으로 승격된다. 영국의 EITI 시행 관련된 일정은 아래 도표에 제시되어 있다.

[영국의 EITI 시행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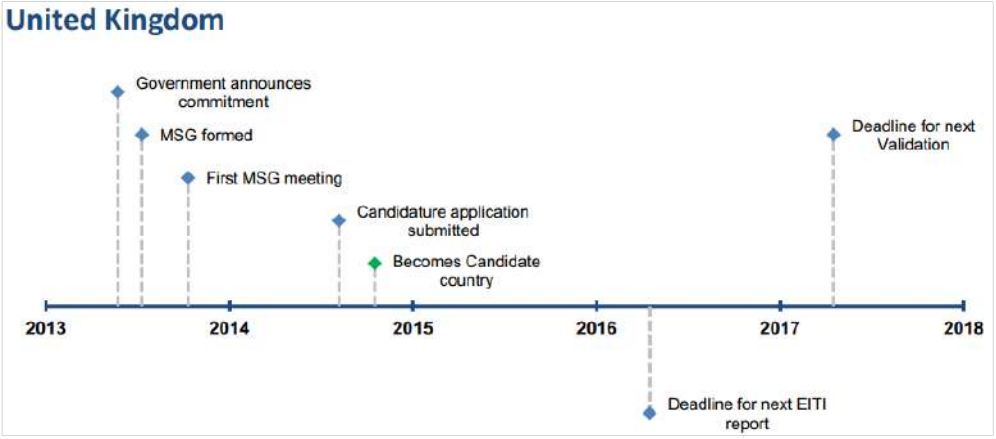

(source: https://eiti.org/united-kingdom)

(2) 관련입법

UK EITI Secretariat에 따르면 영국은 자발적으로 EITI 시행에 참여하고 있고 매년 EITI기준 준수여부를 모니터하고 있으며, EITI 시행을 위한 별도의 입법은 하지 않았다. 다만, 영국은 EU 회원국으로서 위해서 언급한 EU Directive를 시행하기 위한 국내법을 입법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22]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 (BIS)는2014년 8월 UK implementation of the EU Accounting Directive: Chapter 10 계획을 발표하고, 영국에서EU Accounting Directive를 시행하기 위해 제출된 정부 법안에 대한consultation 절차를 밟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관련 기업과 시민사회의 의견들을 반영한 수정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31] 이 법안이 통과되면 EU Accounting Directive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공개 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제공된다. 법안과 관련된 영국 정부의 consultation paper 에 따르면 영국에 등록된 기업(UK registered companies)들은 2015년 1월부터 시작하는 회계년(financial years)를 대상으로 대 정부 지불금 내역을 공개할 의무를 지게되며 회계연도 종료 후 11개월 이내에 보고서를 Companies House에 제출(filing)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의무위반에 대한 벌칙규정(penalty regime)도 두고 있다. 다른 EU 회원국에 모회사를 두고 영국에 등록된 자회사들에 경우에 대해서는 모회사를 통해 지출금 내역 보고를 한다면 영국의 자회사는 보고의무를 면제하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32]

IV. EITI 체제와 관련 입법에 대한 자원보유국과 자원개발기업의 대응

1. 자원개발기업의 입장

EITI 지지회사(supporting company)로 참여하는 자원개발기업의 수와 다양성을 고려할 때 EITI체제 출범 초기에 비하여 자원개발기업들의 EITI에 대한 수용성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이 EITI에 이해관계자(stakeholder)로서 참여하는 것은 EITI를 지지함으로써 참여기업

22) Email (dated 22 Oct 2014) from Vina Krishnarajah, UK EITI Secretariat, "We are implementing EITI voluntarily in the UK, therefore there are no regulations relating to EITI. We will monitor compliance levels through implementation and review annually. HM Revenue & Customs (HMRC) is bringing in legislation to allow them to participate under EITI in the UK. This is because HMRC is a non-ministerial department, therefore they need functions to engage in EITI. However, Chapter 10 of the Accounting Directive which is independent of EITI, does require EU extractive companies to report their payments. The Government response for the consultation was published in August 2014."

의 채굴산업의 주도적인 리더로서 책임성있는 자세를 보여줌으로써 국제적 평판(reputation)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산 막대한 장기 자본투자가 요구되는 자원개발 프로젝트에 있어서 투자대상국인 자원보유국 정부의 투명성이 높아지면 정치적, 사회적 안정성 강화되어 장기적으로는 자원개발기업에게도 이익이 될 것으로 인식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현실적 측면에서도 자원개발기업이 대 정부 지출금 내역을 공개해야하는 상황에 있다면, 2001년 BP가 앙골라 정부에게 제공한 signature bonus의 공개로 촉발된 BP와 앙골라 정부간의 갈등사례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채굴산업 관련 대정부 지출금액의 공개에 있어서 국제적인 공조체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공유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EITI체제가 출범한 것이며, 채굴산업에서의 투명성 제고가 국제적 합의이고 앞으로의 전개방향성을 제시한다면, 자원개발기업의 입장에서는 국제적으로 전개되는 투명성 강화 움직임을 도외시 하기보다는 EITI체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이해관계자로서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기업의 입장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리스크에 대응하는 방안이 된다.

그러나 미국의 Section 1504 Dodd-Frank Act, SEC Rule과 관련된 소송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원개발기업의 입장에서는 채굴산업에서 현지국 정부에 대한 지출금 관련 상세한 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부담감을 보이고 있으며, 현실적으로도 이러한 공개제도의 실행과정에서 EITI체제에 가입하지 않은 현지국 정부의 법제와의 충돌가능성, 비밀유지 계약의무 위반의 문제등 다양한 법적이슈가 제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Dodd-Frank Act, Section 1504와 EU Accounting and Transparency Directive는 EITI 체제와 보완작용을 하면서 국제적으로 채굴산업 관련 투명성 제고에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나, 자원개발기업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도전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특히 미국의 Dodd-Frank Act하에서의 정보공시의무에 관한 입법과 EU에서 정보공개 의무를 규정한 Accounting and Transparency Directive는 기본적으로 자원보유국 정부의 자발적 참여에 기초한 EITI체제에 비하여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어 US또는EU의 관련법이 적용되는 국제적 자원개발기업에게는 강력한 압박으로 다가오고 있다.

채굴산업 관련 국제적인 투명성 강화 체제의 확산과 관련하여 자원개발기업과 관련된 주요 이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법률, 계약의무의 충돌 가능성: 국제적 자원개발회사들은 자원개발현지국 정부에

대한 지출금의 공개의무를 규정한 미국과 EU의 법제가 공개의무에 대한 예외조항을 두지않고 시행된다면 현지 정부의 법제와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23] EITI 이행국에서 자원개발기업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들은 이러한 정보공개가 EITI의 원칙에 부합하므로 문제의 소지가 적지만[24], 현지국이EITI이행국이 아닌 경우 미국 Section 1504 또는 EU Directive에 따른 대 정부 지출금 내역의 상세한 공개는 현지국 법률 위반의 위험이 있다. 공개의무 대상이 되는 지불상대방인 정부의 범위가 중앙정부,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정부가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공기업, 정부 대리기관(Agency)등 광범위한 기관을 포괄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들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 허용 수준이나 계약상의 비밀준수(confidentiality) 의무와의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 총액(aggregated)기준 보고와 분리(disaggregated)기준 보고의 문제: 자원개발기업이 지출금 내역을 공개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내용을 국가단위(country level)에서 집계하여 공개할 것인지 또는 기관단위 (entity level), 프로젝트 (project level)에서 공개할 것인지 와 같은 보고내용의 상세 정도를 결정 기준도 문제가 된다. 미국 Section1504 of Dodd-Frank Act, SEC Rule13q-1에 의하면 국가별 정부 단위의 지출금 내역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단위의 지출금 내역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EU Accounting and Transparency Directive의 경우에도 각국 정부에 대한 지출금의 총액 뿐만 아니라 지출(payment)의 형태에 따른 내역, 지출이 프로젝트별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프로젝트별 지출 내역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대정부 지출금 공개에 있어서 총액(aggregated)기준 보다는 프로젝트 단위, 지출의 형태 단위 등 보다 상세한 내역의 보고을 요구하는 분리(disaggregated) 기준 적용으로 법제들이 정비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EITI에서도 지출금 보고에 분리기준 적용을 반영하였다.

지출금 보고에 있어서 분리(disaggregated)기준의 적용에 대하여 자원개발기업의 입장에서 사업적으로 민감한 정보에 대한 직접, 간접적 외부 공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 되었다. [25] 미국 SEC Rule 은 공개의무와 관련하여 예외조항(exemption provision)을 두지 않았으며 이러한 점은 위에서 언급한 SEC Rule 무효화을 위한 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예외조항 없이 이러한 공개의무 수준의 강화는 기업에게 지나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는 원고측의 주장이 제기 되었다.

---

23) Covington & Burling LLP, Note on EIPI, 2014
24) EITI이행국가에서 지출금에 대한 정보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여도, 구체적인 공개의 수준과 공개형태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25) Supra note 22.

- 법적의무 준수비용 (compliance cost)의 증가: 미국과 EU의 채굴산업 관련 투명성 관련 법제의 시행으로 자원개발회사들은 이들 법제가 요구하는 지출금 공개의무 준수를 위한 보고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증가의 우려를 표명하였다. 자원개발기업이 수행하는 다수 국가에서의 다양한 프로젝트들에 지출되는 금액을 보고의무기준에 맞도록 정보를 추출하고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력의 공급과 훈련, 관련 재무 회계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개발, 내부 절차와 보고시스템의 수립 및 모니터링 및 외부 전문가로 부터의 자문 등 상당한 규모의 준수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의 경우 SEC에서 추산한 바에 의하면 공개의무 준수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관련 법 적용 대상이 되는 미국기업 등이 부담해야할 초기 비용이 10억 달러에 이른다고 추정했고, 향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2억에서 4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26]

- 관련법률 규정에 대한 이해와 의무이행의 문제: 미국과 EU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출금 내역 보고의무 준수에 있어서 요구되는 보고 수준에 따라 자원개발기업이 수행하는 다양한 프로젝트와 관련한 대정부 지출금의 적절한 분류(classification)와 정리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프로젝트 단위별로 보고가 필요한 경우, 단위 프로젝트의 범위는 각 법제에 따라 어떻게 정의되는지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지출금액의 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27]

미국 와 EU의 지출금 공개의무가 법적 강제력을 갖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출금의 형태나 지불상대방에 따른 분류가 잘못되어 법적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법적의무를 회피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위법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도록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EU Directive의 경우는 전술한 바와 같이 Directive 자체가 개별 기업이나 시민을 대상으로 직접적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EU회원국이 Directive의 내용에 따라 국내법(national law) 입법화 함으로써 효력을 갖게 되므로 해당 기업에 적용되는 EU회원국의 개별 입법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유념해야 한다. 법적의무 준수를 위한 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관련 적용법의 조항을 반영한 지출금 내역 분류체계의 형성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EITI 는 자원개발기업들이 EITI체제를 보다 잘 이해하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013년 5월 기업을 위한 “Business Guide” 를 발간하였다. 비즈니스 가이드는 EITI이행국이 EITI관

26) Supra note 22.
27) Ibid.

련 보고를 시행하기 위한 요구사항과 인증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으며, 기업이 EITI를 통하여 어떠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기업들은 EITI 국제사무국(International Secretariat), 이사회(Board), EITI를 이행하는 현지국의 EITI담당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EITI지지회사(supporting company)로 참여하여 EITI활동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다.

2. 자원보유국(Host Country)의 입장

채굴산업 관련 현지국 정부에 대한 수입금 내역의 공개에 대해 초기에는 현지국정부와 자원개발기업간의 갈등을 초래한 바 있다. BP와 앙골라 정부와의 갈등이 대표적 사례인데, 1999년 12월에 Global Witness 는 "A Crude Awakening"을 발간하면서 앙골라(Angola)의 상황에 주목하면서 앙골라에서 자원개발사업을 수행하던 기업에게 현지국 정부에 지불한 지출금 내용을 공개하도록 요구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응하여 2001년 2월 BP(British Petroleum)은 앙골라 정부에 1억 1천백만 달러의 signature bonus의 지급을 공개하였다. 이러한 지급액의 공개는 앙골라 정부로부터 격렬한 반발을 초래하였으며, 현지국 정부와 자원개발기업간의 정보공개를 둘러싼 갈등 사례를 보면서 정보공개캠페인에 참여하는 기관들은 어느 특정 기업이 일방적으로 정보공개를 하는 것은 문제해결 방법이 아니며 국제적으로 관련국가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정보공개체제의 구축이 필요함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은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EITI체제 출범의 배경이 되었다. [28]

현재는 자원보유 개도국의 참여가 확대되어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의 자원보유국이 EITI 준수국가 또는 후보국가로 정보공개에 참여하고 있으며 근래에는 OECD국가들도 동참하고 있다. 현재 EITI에 이행국(implementing country)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가는 48개국에 달하고 있어 채굴산업 관련 수입과 지출관련한 정보공개에 대한 현지국 정부의 자세가 변화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랜동안 폐쇄적 경제체제를 유지해왔던 미얀마와 같은 국가도 2014년 4월에 EITI후보국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2014년 7월에 EITI후보국지위를 얻었다. [29]

EITI체제 참여를 통하여 자원보유 현지국들은 채굴산업 관련한 지배(governance)구조를 강화하고 수입의 투명성 제고를 통하여 채굴산업관련 경제적, 사회적 갈등요소를 낮춤으로써 정치적, 사회적 안정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28) www.publishwhatyoupay.org와 www.eiti.org/history 참조
29) www.eiti.org

EITI를 통한 채굴산업에서의 투명성 제고는 현지국 정부의 재정수입의 실제적 증가에 기여하기도 한다. EITI 이전에는 채굴산업 관련 자금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정보와 수단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EITI의 도입은 현지국 국민들이 정부에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 이를 근거로 채굴산업 관련된 자금을 추적하거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정부의 관점에서도 자금흐름 관련 부정행위나 횡령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콩고 (Democratic Republic of Congo)에서 발간된 EITI 보고서는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2600만 달러에 달하는 로열티 지급액에 대해 세금 징수 문제가 제기할 수 있게 하였다. 나이지리아의 경우에도 2009년 부터 2011년까지 3년의 기간에 대한 EITI 보고서를 통해 회사들이83억 달러에 달하는 미지급 세액이 있음을 밝혀냈고 그 결과 4억 4300만 달러를 징수하였으며 추가적인 조사가 진행 중이다.[33)]

자원보유 개도국이 EITI에 참여하는 중요한 동인 가운데 하나는 글로벌 기관 투자자(institutional investors)를 자원개발프로젝트 투자자들에게 투자 환경의 질(quality)와 정책적 일관성에 관한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점이다. 즉 현지국 정부가 국제적으로 인증된 투명성 기준인 EITI 를 준수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채굴산업 관련 정부의 투명성 향상을 위한 개혁과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적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제시할 수 있다. EITI체제에 stakeholder로서 참여하는 글로벌 투자기관이 80개를 넘고 있으며 이들이 운영하는 총 자산규모가 19조 달러(USD 19 trillion)에 달한다는 EITI 자료[30)]에 기초할 때, 막대한 자본투자가 장기간에 걸쳐 소요되는 자원개발사업에 있어서 현지국 정부의 해외투자자 유치 노력의 일환으로써 EITI를 통한 투명성 제고 노력에 자원보유국이 동참하는 동인을 제공하게 된다. EITI체제는 자원보유 현지국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와 같은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하여 실행되는데, EITI를 통하여 다양한 사회집단의 참여와 대화의 장을 제공하며 관련기관의 책임성을 이끌어 냄으로써 채굴산업에서의 투명성을 높이게 된다. 이를 통하여 정부의 신뢰성을 높이게 되며 보다 양질의 투자자을 유치하게 할 수 있게 된다.

EITI의 성공적인 시행 사례로 라이베리아(Liberia)가 제시되고 있는데, 15년간의 내전과 에볼라의 창궐을 겪은 가난한 서아프리카의 작은 나라인 라이베리아는 ETIT 도입초기부터 이행국가로 참여하였으며 2009년 7월에는 EITI 이행을 위한 법(The LEITI Act)도 제정하였다. 2014년 6월에는 5번째 EITI 보고서를 발간하였는데 5년간 연속으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라이베리아는 EITI참여를 통하여 시민사회(civil society)를 강화하고, 관련 법제를 정비하여 투명성 제고하였다.[34)] 라이베리아는 분리(disaggregated)기준에 의한 회사 수준 , 수입

30) www.eiti.org

형태 수준 보고를 수행하고 있으며, 채굴산업 뿐만 아니라 임업, 농업 분야에도 정보공개를 적용하고 있다. 광권관련 계약도 공개하고 있으며 실질소유권(beneficial ownership)의 공개에 대한 시험운영도 실시하고 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EITI를 시행하는 국가들에서 그동안 정치적 이유 등으로 공개적 논의가 제한되어 왔던 채굴산업 관련 실질적 소유권문제, 탈세문제, 공개되지 않은 이면계약의 문제, 비 정상적 이전가격 문제 등이 다루어 지게 되었다.[35)]

V. 결어 - 채굴산업 투명성 제도의 확장과 시사점

풍부한 부존자원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원개발의 혜택에서 소외된 저개발 현지국 국민에게 이익을 돌려주고자 하는 이상적인 목표에서 출범한 EITI는 지속적인 국제적 지지를 받으면서 발전하여 왔으며, 현재 31개 EITI준수국, 17개 후보국이 참여하고 국제적 자원개발기업, 기관투자자, 시민사회 단체등 다수이해관계집단(Multi-Stakeholder Group)이 참여하는 국제적 체제로 성장하였다.

2003년 EITI가 출범한 이래로 그동안의 시행 성과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기초로 기존의 선언적 원칙과 여러 규칙을 정비하는 노력이 계속되어왔다. 2013년 5월 시드니 글로벌 회의에서 채택된 EITI Standard는 EITI 시행 제1기라 할 수 있는 2003년에서2013년까지10년 의 경험을 반영한 것으로써, EITI체제의 효과적 실행을 도모하고 각국의 상황에 적합한 시행체제를 형성하기 위한 절차를 갖추는 등 EITI체제 이행의 새로운 단계로의 전환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러한 EITI체제의 정비는 미국과 EU에서 진행되고 있는 채굴산업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제의 정비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메이저 자원개발기업들이 기반을 두고 있는 미국과 EU에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 정보공개 의무의 도입은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기존의 투명성 이니셔티브와는 다른 차원에서 자원개발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Section 1504 of Dodd-Frank Act를 시행하기 위한 SEC Rule이 2013년 법원 판결내용에 따라 다시 제정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원개발기업들은 미국 연방정부뿐만 아니라 당해기업이 자원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모든 현지국정부에 지급한 지출 내역을 각국 정부별 금액, 지출 형태별 지급 금액, 프로젝트별 지급금액 등으로 정리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EU의 경우에도 Accounting Directive와 Transparency Directive에 따라 EU회원국 정부가 관련 입법을 완료하게 되면 해당국 법률

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법 적용 대상이 되는 EU 증권거래시장에 상장되었거나 EU 국가에 등록된 기업들은 채굴산업 및 벌목(logging)업 관련하여 EU회원국 정부 및 제3국 정부에 지불한 지출금 내역을 정부 단위, 프로젝트 단위, 지출형태 단위 등으로 분리(disaggregated) 기준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미국과 EU에서 도입되는 제도는EITI 체제와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면서 채굴산업 투명성 관련 기준을 강화하는 국제적 체제를 형성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채굴산업의 국제적 경쟁에서의 불균형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EITI 체제을 이행하는 준수국나 후보국에서 자원개발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모든 기업은 현지국 정부의 EITI관련 법제에 따라 대 정부 지출금 내역을 공개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미이행 국가에서 자원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는 정보공개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Section 1504는 모든 외국정부에 지급하는 지출내용의 내역을 보고하도록 하여 EITI비참여국가의 정부에 대한 지출금 내역도 보고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Section 1504는 기본적으로 SEC에 등록된 기업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어 SEC에 등록되지 않는 기업들은 공개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EU Accounting Directive, Transparency Directive역시 EU 증권거래시장에 상장되었거나 EU 국가에 등록된 기업을 대상으로 법적의무가 부과된다. 따라서 미국이나 EU의 법이 적용되지 않는 기업이 EITI미이행 국가에서 자원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 미국, EU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에 비해 불공정한 경쟁을 할 우려가 제기된다.

해외자원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상당수의 메이저 기업들이 Section 1504와 EU Directive의 적용대상이 되지만, 러시아, 중국, 인도와 같은 EITI 비참여 국가의 기업들 가운데 미국 또는 EU의 관련법 적용이 않되는 기업이 문제가 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러시아의 6대 에너지 기업 가운데 4개 기업이 미국SEC에 등록되어 있거나 EU증권거래소에 거래가 되고 있어 공개의무가 있으나 2개 기업은 적용대상이 되지 않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 16대 광업기업 가운데 2개 기업이 미국 SEC에 등록되어 있고 5개 기업이 홍콩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어[31] 공개의무를 지게되나 9개 기업은 법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도의 경우도 3대 석유회사 가운데 2개 회사가 미국이나 EU에 상장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32] 따라서 Section 1504 또는 EU Directive의 적용을 받지 않는 러시아, 중

31) 홍콩 증권거래시장의 경우도 유사한 정보공개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32) Theodore Moran, Reform EITI to Require Compliant Countries to Publish Disaggregated Company-by-Company Revenue Payment, Proposal for the EITI Strategy Review 2013, CGD Policy Report의 분석 내용을 인용한 것으로 2012년 기준이므로 숫자의 변동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주장의 기본적 취지는 유효함.

국, 인도의 기업들이 EITI 비참여 국가에서 자원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현지국 정부에 대한 지출금을 공개할 의무는 없으며, 국내적으로도 EITI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러시아, 중국, 인도 등의 기업들에 대한 투명성 제고와 관련한 국내의 정치적 압력도 제한적일 것이다.

Section 1504와 EU Directive가 본격적으로 시행, 정착되면 글로벌 시장에서의 자원개발 경쟁의 형평성 관점에서 미국과 EU의 자원개발기업은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보공개의무의 보편적, 비차별적 적용을 주장하는 목소리를 더 강하게 낼 것이다. 즉, 모든 자원개발회사들이 동등한 정보공개 의무를 부담하게 하도록 요구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의 장을 형성하려는 것이다. 채굴산업투명성과 관련된 법제의 도입과 제도적 환경변화 속에서 경쟁우위를 지키려는 자원개발기업들의 의도는 결과적으로 채굴산업 투명성 체제의 가속적 확장을 초래할 수 있다.

채굴산업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제적 체제의 확장은 우리나라 자원개발기업의 경우에도 영향을 미친다. EITI체제를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기업이 주도적으로 자원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경우 EITI준수국가로 승격되었으며 미얀마의 경우는 2014년 7월에 EITI후보국가로 승인되었다. 따라서 EITI 이행국(implementing countries)에서 자원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우리나라기업은 현지국에서 EITI 와 관련하여 어떠한 기준과 절차를 갖고 보고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EITI의 보고 기준이 새롭게 도입되는미국과 EU의 기준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도 필요하다.

EU Accounting Directive와 Transparency Directive도 EU 회원국들이 관련 시행입법을 완료하는 대로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이다. EU Directive 시행과 미국내 NGO들의 압력을 고려할 때 Section 1504역시 SEC Rule이 개정 발효되는 대로 시행 될 것이다. 우리나라 자원개발기업들도 EU에 법인을 설립하여 자원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미국 또는 EU증권거래소에 증권을 상장하고 이에 따른 연차보고 의무가 있는 경우 Section 1504 또는 EU Directive에 따른 관련국 법의 적용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채굴산업에서의 투명성 제고를 노력은 국제사회의 이상을 구현하기 위한 선언적 제도가 아니라 법적 구속력을 갖는 국제적 체제로서 형성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적 변화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자원개발산업의 국제적 리더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국제 공동체의 노력에 선도적으로 참여하는 전향적 접근도 고려되어야 한다.

[Reference]

- David-Barrett, Liz and Ken Okamura, European Research Centre for Anti-Corruption ad State-Building, Working Paper No.38, 2013
- Darby, Sefton and Kristian Lempa, "Advancing the EITI in the mining sector: implementation issues, World Bank, Working Paper 82685, 2013
- Darby, Sefton, "The Case for Company-by-Company Reporting of Data in the Extractive Industries Transparency Initiative", Revenue Watch Institute, 2009
- EITI International Secretariat, The EITI Standard, 2013
- EITI International Secretariat, Factsheet 2014
- EU Parliament, The Extractive Industries Transparency Initiative: State of play, Briefing 2014/06/24
- Mills, Stephen, Why isn't Australia signing up to mining revenue transparency?, The Conversation, 30 October 2014
- Moran, Theodore H, 2011, "Promoting Universal Transparency in Extractive Industries: How and Why?",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 Publish What You Pay, "Oil Company Lawsuit Against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Threatens Global Transparency Initiative", October 23, 2012
- Publish What You Pay Canada, APERIO, October, 2011
- Publish What You Pay, United States Legislative History: Cardin-Lugar Amendment or Section 1504 of the Dodd-Frank Financial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 Publish What You Pay, Fact Sheet-SEC Rules for Oil and Mineral Payment Disclosure, 2012
- Publish What You Pay, Fact Sheet - EU rules for disclosure of payments to govern-

ments by oil, gas and mining (extractive industry) and logging companies, Nov 2013.

- SEC Release No. 34-67717 (File No. S7-42-10)

- UK Department for Innovation, Business and skills, UK Implementation of the EU Accounting Directive: Government Response for Consultation, August 2014

- Am. Petroleum Inst. v. S.E.C., CIV.A. 12-1668 JDB, 2013 WL 3307114 (D.D.C. July 2, 2013)

- Chapter 10 of the new Accounting Directive 2013/34/EU.

- Article 6 of the Transparency Directive 2004/109/EC

[Appendix: Stakeholders of EITI]

Stakeholders (Number)	Name of organisations
Countries (17)	Australia, Belgium, Canada, Denmark, Finland, France, Germany, Italy, Japan, Norway, Qatar, Spain, Sweden, Switzerland, The Netherlands, The United Kingdom, The United States
Companies (91)	Adaro, Afren, Africa Oil, African Rainbow Minerals (ARM) Ltd, Alcoa, Alliance Mining Commodities Limited (AMC), AMG Advanced Metallurgical Group N.V., Anglo American, AngloGold Ashanti, Antofagasta Minerals, ArcelorMittal, AREVA, Avocet Mining Plc, Barrick Gold Corporation, Base Titanium Ltd, BG Group, BHP Billiton, BP plc, Cairn Energy PLC, Centerra Gold, Chevron Corporation, Codelco, ConocoPhillips, Dana Petroleum, De Beers, DNO International ASA, DONG Energy, Dundee Precious Metals, eni, Eramet, ExxonMobil, Fleurette Properties Limited, Freeport-McMoran Copper & Gold, Galp Energia, GDF SUEZ, Glencore, Gold Fields, Goldcorp, Goldlake Group, Hess Corporation, Hudbay, IAMGOLD, Impala Platinum Holdings Limited (Implats), Inpex Corporation, InterraRMG, JX Nippon Mining & Metals, Kinross, KOGAS, Kosmos Energy, London Mining, Lonmin, Lundin Petroleum AB, Maersk Oil, Marathon Oil Corporation, Mitsubishi Metals Corporation, MMG, MOL Group, Newcrest Mining Limited, Newmont Mining Corporation, Noble Energy, Norsk Hydro ASA, Oil Search Limited, Ok Tedi Mining Limited, Oxus Gold, OZ Minerals, Pacific Rubiales Energy Corp., Paladin Energy Limited, REMEX, Petrobras, Qatar Petroleum, Repsol S.A., Rio Tinto, Royal Dutch Shell plc, RWE AG, Santos, Spatial Dimension, Statoil ASA, Sumitomo Metal Mining Co., Ltd., Swala Energy Limited, Talas Copper Gold LLC/Gold Fields Kyrgyz Republic LLC, Talisman Energy, Tata Steel CI, Teck Resources Limited, TIMOR GAP, E.P, Total, Tullow Oil, United Hydrocarbon International Corp, Vale, Volkswagen Aktiengesellschaft, Woodside

Institutional Investors (94)	Aberdeen Asset Managers Ltd, Actiam, Allianz Global Investors, Amundi, AP1-First Swedish National Pension Fund, AP2- Second Swedish National Pension Fund, AP3-Third Swedish National Pension Fund AP4-Fourth Swedish National Pension Fund, APG Asset Management NV, Association of British Insurers, ATP The Danish Labour Market Supplementary Pension, Aviva Investors, Baillie Gifford & Co, Banco Fonder, Bank Sarasin, Batirente, Boston Common Asset Management, British Columbia Investment Management Corporation, CAAT Pension Plan, Caisse de Depot et Placement du Quebec, CalPERS, CalSTRS, Calvert Group Ltd, Canadian Labour Congress, CCLA, Central Finance Boar of the Methodist Church, Christian Brothers investment Services, Co-operative Insurance Society, Colonial First State Global Asset Management, CPP Investment Board, Dexia Asset Management, DNB, Domini Social Investments, Ecclesiastical Investment Management, Element Investment Managers, ERAFP, Ethos Investment Foundation, F&C Management, Fidelity Investment, Folksam Insurance Group, Fonds de Reserve pour les Retraites, Goldman Sachs Asset Management International, Governance for Owners, Guile Foundation, Henderson Global Investors, Hermes Investment Management Limited, Hospital of Ontario Pension Plan (HOOPP), HSBC, I.DE.A.M-Integra Development Asset Management, Illinois State Board of Investment, ING Investment Management, Insight Investment Management, InSpire Invest, JPMorgan Asset Management, Jupiter Asset Management, Kames Capital, Legal & General Investment Management, Local Authority Pensio Fund Forum, MN, NEI Investments, New Africa Mining Fund, New Asset Management Ltd, Nordea Asset Management, Norges Bank Investment Management (NBIM), Nottinghamshire County Council, Ohio Public Employees Retirement System, Ontario Teachers' Pensions Plan (OTPP), OPTrust, PGGM, Railpen Investments, RCM Technology Trust, Rio Tinto Pension Investments Ltd, Robecco, Schroders Investment Management, Scottish Widows Investment Partnership, Services Employees international Unio, Standard Life Investments, State of Connecticut, State Street Global Advisors, Stichting Pensioenfonds ABP, Stichting Pensioenfonds UWV, Storebrand, Swiss Re Asset Management, The Dreyfus Premier Third Centur Fund Inc and the Dreyfus Socially Responsible Growth Fund Inc, Threadneedle Asset Management Ltd., TIAA-CREF, Trades Union Congress, Trillium Asset Management, UBS Global Asset Management Ltd, UniSuper, Universities Superannuation Scheme, Walden Asset Management, York University Pensions Fund
Civil Society organisations (8)	Catholic Agency for Overseas Development (CAFOD), Global Witness, Natural Resource Governance Institute, Open Society Institute, Oxfam, Publish What You Pay Coalition, Secours Catholique (Caritas), Transparency International
Partner Organisations (21)	African Development Bank (AfDB), African Union, American Petroleum Institute (API), Asian Development Bank (ADB), Australia-Africa Mining Industry Group (AAMIG), Commonwealth Secretariat, EI Source Book,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EBRD),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Investment Bank (EIB), G20, G8,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DB), international Council on Mining and Metals (ICMM),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International Organisation of La Francophonie (OIF), International Organisation of Oil and Gas Producers (OGP), KfW Bankenrgrupe, Open Government Partnership,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World Bank Group

Source: https://eiti.org/supporters/companies

[1] EITI, EITI factsheet, 2014
[2] Darby, Sefton, "The Case for Company-by-Company Reporting of Data in the Extractive Industries Transparency Initiative", Revenue Watch Institute, 2009
[3] Ibid.
[4] Ibid
[5] Ibid
[6] https://eiti.org/countries
[7] http://eiti.org
[8] Publish What You Pay, "Oil Company Lawsuit Against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Threatens Global Transparency Initiative", October 23, 2012
[9] https://eiti.org/supporters/countries
[10] Supra note 8
[11] http://eiti.org
[12] Supra note 8
[13] http://eiti.org
[14] Supra note 8
[15] Publish What You Pay, October 2011, United States Commits to EITI Implementation
[16] https://eiti.org/united-states-america
[17] Moran, Theodore H, 2011, "Promoting Universal Transparency in Extractive Industries: How and Why?",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18] PwC, Another side of Dodd-Frank: Understanding Section 1504, 2012
[19] Publish What You Pay United States, "Fact Sheet-SEC Rules for Oil and Mineral Payment Disclosure", 2012
[20] Ibid.
[21] Ibid.
[22] Publish What You Pay, "Oil Company Lawsuit Against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Threatens Global Transparency Initiative", October 23, 2012
[23] 배윤정, 채굴산업 회사들의 대 정부지출내영 공시의무에 관한 미법원 판결, CGS Report 2013.
[24] Publish What You Pay, "Oil Company Lawsuit Against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Threatens Global Transparency Initiative", October 23, 2012
[25] Ibid
[26] Moran, Theodore H, 2011, "Promoting Universal Transparency in Extractive Industries: How and Why?",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27] Ibid
[28] Publish What You Pay, October 2011,European Parliament Endorses Transparency
[29]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326638/Differences_between_EITI_and_Chapter_10_of_the_Accounting_Directive-Final.pdf
[30] http://www.publishwhatyoupay.org/resources/how-eu-transparency-legislation-would-reinforce-eiti
[31] https://www.gov.uk/extractive-industries-transparency-initiative
[32]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343599/bis-14-1006-eu-accounting-directive-implementation-extractive-industries-reporting-response.pdf
[33] Ibid.
[34] https://www.gov.uk/government/news/new-standard-boosts-mining-and-energy-transparency
[35] Stephen Mills, Why isn't Australia signing up to mining revenue transparency?, The Conversation, 30 October 2014
[36] Darby, Sefton, 2009, "The Case for Company-by-Company Reporting of Data in the Extractive Industries Transparency Initiative", Revenue Watch Institute